

## ◎ 홍문기 (발제자,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토론자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임은 물론,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해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적절하게 지적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박현수 국장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제가 깜짝 놀랐던 점은,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지만 기사삭제청구권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기사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은 기자들이 게이트키퍼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창작물을 삭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 또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가 되는 기사에 대해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요즘 언론사들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실제 메시지 가공 과정, 그 가공 과정으로 만들어낸 콘텐츠, 그리고 그것의 유통범위가 어떠한지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사삭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인 국민의 알 권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당 문제들을 인식하고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광건 위원님께서서는 법 개정의 필요성과, 법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부분을 나누어 말씀해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사삭제청구권이 도입될 경우 법체계나 법의 논리구조상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러한 피해구제방법이 실제로 적용이 되었을 때 실질적인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법 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법 개정 없이 시행하게 되면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 것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중재 심리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제문에서 언급했듯이, 대법원은 기사삭제청구권을 수용함에 있어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를 진행하다보면 기사내용의 허위사실 여부를 가려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객관적 동의를 이루어진 자연적, 물리적인 사실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보도로 결정되고, 의견이나 주장 차이의 경우 대부분 반론보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사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의 취재·편집·보도에 관한 고유의 범위나 영역을 존중하되 오래 전 게재된 기사이지만 이로 인해 명백한 피해사실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동의,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구제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 역시 고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인격권과 물권을 비교, 설명하신 부분은 아주 중요한 점이고 탁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인격권을 물권적 성격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사의 게이트키퍼 과정을 거친 콘텐츠에는 바이라

인이 달리게 됩니다. 어느 언론사의 어느 기자에 의해 작성된 기사라는 사실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기자에게 묻기보다는 그 언론조직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의 문제는 별도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사가 삭제되어 삭제된 댓글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게 될 수도 있고 삭제 자체가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사 댓글에 대한 삭제를 기사와 연동하여 정리하는 방법을 제안한 이유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포털사이트나, 뉴스큐레이션, 또는 뉴스를 다루는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유통되는 콘텐츠가 기사라면 언론조직의 게이트키퍼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뉴스큐레이션 업체도, 포털사이트도, 개인도 마찬가지로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